

合理的 登錄金豫告制 실시, 빠를수록 좋다

宋 桢
(延世大 經營學科)

1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대학인구 가운데 약 7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私立大學의 질적 발전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는 또한 財政充實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과제라고 본다. 사립대학의 재정수입은 흔히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학교법인(재단) 전입금, 학부형 등 등록금 남부의 무자의 등록금 수입 및 사회복지자의 기부금 수입의 4 가지로 분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부담이 약 50%, 학부모 부담이 약 45%인 터 비하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부모 등 등록금 남부의 무자의 부담이 약 80%

정도이고 재단부담이 약 16%, 그리고 국고보조는 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립대학 재원의 대부분은 學生納入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등록금과 관련하여 현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등록금을 어떻게 策定하는 것 이 합리적이며 학생들과의 갈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책정된 등록금을 어떻게 納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립대학 재정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교육의 質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위의 두 가지 현안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지만, 본고에서는 특별히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공교

롭게도 교육부가 1989 학년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을 각 사립대학별로 완전自律策定도록 한 것과 맥을 같이하여 매학년초 학교예산 편성시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학생들의 주장이 학내 문제화되고 있다. 그 중 공통적이면서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 동결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학생들의 슬로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인 登錄金豫告制의 실시로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2

등록금에 고체란 등록금의 납입주체인 학교가 등록금 남부의 무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등록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在學期間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액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등록금예고제는 등록금의 여러 가지 성격 중 학교비용으로서의 일종의 契約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사립대학 당국은 대학입시 전에 재학기간중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을 사전 예고하고, 이 예고된 금액에 따라 학부형 등 등록금 납부의무자는 아무런 이의없이 예고된 등록금액을 납부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하고 실제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와의 수업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등록금예고제는 후술하는 登錄金 納入方法 多樣화의 전제조건이 된다. 대학입시 전에 재학기간중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액을 미리 예고하는 등록금예고제는 다음과 같은目的이 있다.

첫째, 등록금 책정과 연관된 학원내 葛藤을 미연에 해소할 수 있다. 등록금예고제가 학원내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입학 전에 예고된 등록금액을 통하여 수업계약이 체결되므로 매 학년초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고 이로 말미암아 적어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학내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둘째, 사립대학 당국의 計劃的・公開的 대학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사학재정 쟁실화를 기할 수 있다. 이는 등록금예고

제가 적어도 2~4년 간의 학교제정에 대한 中・長期發展計劃을 진지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등록금 납입방법의 多樣化를 가져올 수 있다. 예고된 등록금액에 따라서 협행의 학기별 납부방법 외에 연납제・분납제・일시선납제・동일금액 납부제 등 다양한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금예고제 실시로期待되는 여러 效果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금예고제는 사립대학 당국이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 또는 등록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할 부담액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등록금액의 과다를 대학지원의 고려사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등록금예고제를 하나의 情報接近 방법으로 고찰할 수 있다. 즉, 등록금예고제는 학교가 학생 또는 학부형 등 등록금 납부의무자에게 등록금을 사전에 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 또는 등록금 납부의무자는 예고된 정보를 감안하여 선택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학부형 등 등록금 납부의무자는 재학기간 동안 登錄金 조달에 餘裕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

셋째, 사립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計劃性 있게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인들의 共同體 意識을 함양하여 대학발전을 위

해 함께 의사결정하는 대학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금을 예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前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학교와 학부형 간의 合意(consensus)이다. 등록금은 등록금 납부자인 학부형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학의 財政構造이다. 각 사립대학은 상이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각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폭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셋째, 등록금 인상요인의 合理的豫則이 가능해야만 한다. 등록금 인상요인은 크게 주요교육여건의 개선(교원확보・시설설비 투자 및 장학금 수요의 증대・학생증원 등), 교직원 처우개선, 물가변동률 반영,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 및 학생의 복리시설 증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등록금예고제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상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의 중・장기적인 發展計劃이 실행되어야 한다. 등록금이 학교에 유입되었을 경우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학생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며, 몇년 후에 학교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장기계획이 없이는 등록금을 예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외에 학교의 特殊狀況要素를 고려해야 한다. 왜

나하면 각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설립정신이 다르고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등록금에 고재를 인상률과 예고기간을 두 변수로 하여 분류하면 다음의 4 가지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표 1〉 예고제 매트릭스

예고기간 인상률	단기		장기
	학정	단기 확정제	장기 확정제
변동	단기변동제	장기변동제	

위의 매트릭스에서는 예고기간을 극단적 경우인 단기(1년, 1 학기)와 장기(4년)의 두 가지로 나누고, 인상률도 확정방법(인상요인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그 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정액으로 예고하는 방법)과 변동방법 기준(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만 제시하고 실

제인상률은 해당 학년도의 기준변동률 등이 확정될 때 그것을 조정률로 대체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 단순하게 표시한 것이다.

매트릭스 중 長期確定制는 등록금에 고재의 대표적 형태로서 4년분 등록금을 입학요강에 확정금액으로 기재하여 대학지원자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예고된 등록금이 대학지원의 선택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입학한 후에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입학시 4년치 등록금이 예고되고 이를 일종의 계약형태로 상호 수용하게 되므로 학교와 학생들 간에는 4년 동안의 등록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2년도 신입생에게 향후 4년간 적용할 등록금을 입학요강에 아래 〈표 2〉와 같이 예고한다(물론 사전에 인상률을 반영하여 확정적으로 예고한다).

〈표 2〉 장기확정제(예 : Y대 상경대학)

(단위 : 원)

구 分	'92학년도분	'93학년도분	'94학년도분	'95학년도분	비 고
금액 (2 학기분)	2,000,000	2,400,000	2,800,000	3,300,000	인상률 17~20%
비 고	1 학년분	2 학년분	3 학년분	4 학년분	

* 인상률은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가정함.

〈표 3〉 일시선납제(예 : Y대 상경계열)

(단위 : 원)

구 分	'92학년도분	'93학년도분	'94학년도분	'95학년도분
비 고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금액 (2 학기분)	2,000,000	2,400,000	2,800,000	3,300,000
일시선납금액	2년치일시	4,018,920	—	—
	3년치일시	6,173,800	—	—
	4년치일시	8,434,135	—	—

그런데 현행 학기별 납부제를 통한 등록금의 책정과 납입방법은 이자율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는 단순납입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합리성과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금에 고재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이 등록금 納入方法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① 一時先納制度 : 이 제도는 매 학기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개 학년분, 3개 학년분 또는 4개 학년분의 전 등록금을 입학과 동시에 미리 現價概念(present value)으로 할인하여 선납함으로써 선납한 기간에 한해 추후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追加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의 長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당국은 등록금을 사전에 수납하고, 수납된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써 교육재정의 충실회 및 금융이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등록금을 일시 납부함으로써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조달하는 어려움을 없앨 뿐 아니라 추후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이 이미 일시선납한 등록금액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매년 등록금 인상률이 공금리율보다 높을 때는 확실하게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장기화정제에서 등록액을 현가계산을 통하여 일시 선납할 경우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면 앞의 <표 3>과 같다.

② 同一金額納付制度: 동일금액 납부제도란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매년 납부하는 등록금이 동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금액 산정은 신입생에서부터 2, 3, 4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물가상승 및 그밖의 요인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일금액 납부제도란 향후 등록금액 인상요인을 사전에 계산하여 입학 후 졸업까지 4년 동안 등록금액을 변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하

는 제도이다. 물론 이러한 동일금액 납부제도도 앞에서 설명한 등록금예고제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대학 등록금에 대한 책정과 납입방법도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단순모델, 즉 매 학년 초 등록금액 책정과 학기별 납부방법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립대학 登錄金豫告制는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 본다.

결론적으로 등록금예고제는 대학입시 전에 재학기간중 학생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등록금 納付義務者에게는 대학지원의 고려요소는 물론 납입방법의 선택权을 넓혀 주고, 大學生들에게는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학원내 갈등을 해소하며, 私學當局에게는 등록금 자율화의 정착을 통하여 계획적·공개적인 대학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사학계정의 충실화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측면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에서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금예고제의 실시를 찬성하는 것이다. ■